

인천지방법원 2023. 4. 19 선고 2022가단22809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가람

변 론 종 결 2023. 3. 22.

판 결 선 고 2023. 4. 19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(선정당사자) A에게, 피고 B은 4,870,129원, 피고 C, D는 각 3,246,753원, 선정자 E, F, G에게, 피고 B은 각 3,246,753원, 피고 C, D는 각 2,164,5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

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[이하에서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을 ‘원고들’이라고만 한다]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들 주장의 요지

원고들 및 피고들은 소외 망 H의 상속인들인바, 위 망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재산인 경북 상주군 I 전 2,089㎡을 공유하게 되었음에도, 피고들은 이를 독자적으로 과수원으로 점유사용하며 연 10,000,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.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 사망 후 25년간 독점적으로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얻은 연 10,000,000원, 25년 합계 250,000,000원 상당의 수익금 중 각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연 10,000,000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. 결론

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상욱

별지